남북화해와 시대정신

온 나라가 국가보안법 논란으로 떠들썩하다. 주장은 많은데 생산적인 논의는 많지 않다. 보완 없는 무조건적 폐지 주장과 개정조차 용납 않는 맹목적 존치 주장만 양 극단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점은 지금 시기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차분히 짚어보고 엄정한 평가에 기초하여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 북 '흡수통일 막기' 안간힘

국가보안법은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남북이 대치하던 불안한 상황에서 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북의 적화통일을 막는 데 기여했던 게 사실이다. 지금 당장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과거 보안법의 실질적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보안법은 독재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정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

최근에는 탈냉전과 민족화해의 시대 상황이 도래함으로써 애초 건국 직후의 입법취지와 법정신의 유효성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보안법이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이 아니라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도 북한은 대남 공작에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북을 방문한 남측 인사들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의 연방제 주장이 적화통일 전략이 아니라 흡수통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성격이 변화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민간교류와 접촉이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제 보안법은 시대역행적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다. 남측의 수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북한을 출입하고 북측 안내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떠나올 때 선물을 주고 받는 지금의 현실을 잠입탈출과 회합통신 및 금품수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주요 근거로 이른바 상호주의적 관점이 자주 거론된다. 즉 북한의 형법과 당규약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 먼저 무장해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북한 형법 중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반국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형법에 담고 있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나 보안법은 형법과 별개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연계행위 전반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이를 북한 형법과 연계시키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어긋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업 규정 역시 곧바로 보안법과 연계하기 힘들다. 당규약은 추상적인 목표설정의 내용으로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한주민과의 회합통신과 편의제공 등을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우리 역시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방안도 우리가 주

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친북행위엔 자정능력 충분

보안법의 운명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수용성에 대한 믿음이다.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이 이미 종료되었고 국민 대다수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친북행위와 주장은 이제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도태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는 확신하고 있다. 이미 친북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수용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유물로 넘기고 이제 우리 시민사회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출처 : 한겨레신문 기고 2004. 9. 16>